

#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전공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 정 2012. 12.  
 개 정 2014. 4.  
 개 정 2015. 10.  
 개 정 2019. 11.  
 개 정 2023. 9.  
 개 정 2023. 1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함) 학칙 제31조에서 정한 연계전공, 한국어전공, 자기설계전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융합(공유)전공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05.)

**제2조 (용어의 정의)**

1. “연계전공”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둘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을 연계하여 이수하는 전공을 말한다. 단, 동일 학부 내에 설치된 전공간의 연계는 연계전공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9.11.05.)
2. “자기설계전공(학생설계전공)”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학생 스스로 본인소속 전공 외의 교육과정을 학제적으로 구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전공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11.05.)
3. “융합(공유)전공”이라 함은 둘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의 교육과정을 학제적으로 융합하여 새로운 제3의 전공을 이수하는 과정을 말한다.(신설 2019.11.05.)
4. “주관 학부(과)”는 당해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전공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 학부(과)를 말한다.
5. “책임교수”라 함은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전공의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별 담당교수를 말한다.
6. “과정”이라 함은 연계전공 또는 자기설계전공 또는 융합(공유)전공을 말한다.(개정 2019.11.05.)

**제3조 (과정의 설치 및 적용의 범위)** ①융합(공유)전공 및 연계전공의 설치는 해당 전공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부(과)는 별지1의 양식에 의하여 신청하고 총장의 승인으로 설치 할 수 있다.(개정 2019.11.05.)

②자기설계전공은 동 규정 제5조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학생스스로 전공을 설계하여 동 규정 제6조에 따라 신청하고 소속 학부(과)에서 심의 후 총장의 승인으로 이수 할 수 있다.

③연계전공, 자기설계전공, 융합(공유)전공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과정에 한하여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9.11.05.)

**제4조 (운영 및 지도의 의무)** ①각 과정 운영을 담당하기 위하여 각 과정별로 책임교수를 두되, 주관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가 겸직할 수 있다.(개정 2019.11.05.)

②각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의 협의는 주관학부(과)의 책임교수를 포함한 학부(과)단위에서 진행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책임교수 주관하에 각 과정의 관련 학부(과)장이 참여하여 심의한 사항을 총장의 승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개정 2019.11.05.)

③ (삭제 2019.11.05.)

④각 과정의 주관학부(과)의 책임교수는 과정운영에 대한 학사업무를 관장하고 해당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및 학사관련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책임교수는 관련학과의 전임교수를 관련 업무에 겸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1.05.)

**제5조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①각 과정의 교육과정 편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 한다.(개정 2019.11.05.)

1. 연계전공

- 가. 총 편성 학점: 36학점 이상
- 나. 공통 학점 편성: 전공 21학점 이상
- 다. 소속 학부(과) 전공의 연계전공 편성 학점: 전공 15학점 이상

2. 자기설계전공(개정 2023.12.11.)

- 가. 1학년 이상 수료자 또는 2학년 편입생 편성학점: 전공필수 16학점 이상, 전공선택 34학점 이상
- 나. 3학년 편입생 편성학점: 전공필수 6학점 이상, 전공선택 36학점 이상
- 다. 4학년 편입생 편성학점: 전공선택 21학점 이상

3. 융합(공유)전공(신설 2019.11.05.)

- 가. 총 편성 학점: 전공 65학점 이상
- 나. 전공필수 편성 학점: 27학점 이상
- 다. 전공선택 편성 학점: 38학점 이상

②제1항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 및 연도별 “교육과정 편성 지침”에 의한다.

③각 과정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주관학부(과)에서 진행하며, 자기설계전공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개설 학과에서 진행하되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지도는 주관 학부(과)장 또는 담당지도교수가 한다.(개정 2019.11.05.)

④자기설계전공의 학생별 이수 교육과정은 주관 학부(과)장 또는 담당지도교수가 심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⑤기타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전공 이외의 교육과정은 소속 학부(과)의 전공 교육과정에 따른다.

**제6조 (신청 및 포기·취소)** ①각 과정의 신청 자격은 본 대학 재학생 중 본 대학 “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제1호에 의한 1학년 이상의 수료 예정자 또는 2학년 이상 편입생에 한한다. 다만, 학칙 제55조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19.11.05.)(개정 2023.09.20.)

②연계전공, 융합(공유)전공 및 자기설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기간 내에 교무처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해 신청서를 소속 학부(과)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05.)(개정 2023.12.11.)

③소속 학부(과)장은 학생이 신청한 전공 책임교수와 전공의 타당성 및 교과과정 등의 과정심사를 진행한 후 1차 소속학과승인을 완료 한 자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 한다.

④연계전공은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융합(공유)전공 및 자기설계전공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19.11.05.)(개정 2023.12.11.)

⑤본인이 신청한 과정을 포기 또는 취소 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 포기 또는 취소기간 내에 별지3에 의한 포기·취소원을 학생소속 전공의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포기·취소 신청서를 받은 학부(과)장은 과정별 책임교수와 협의하여 포기·취소 여부를 심의하고 교무처에 승인을 받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주관학부(과)의 책임교수는 과정별 이수자가 학기별 평균성적이 1.5이하 이거나 본 대학 학칙에 의한 징계사유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취소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생소속 학부(과)장과 협의 후 교무처의 승인을 받아 직권취소 할 수 있다.

⑧과정별 이수자 결정은 교육여건 및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그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학점의 이수)** ①각 과정은 제2학년 1학기 이후부터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② (삭제 2019.11.05.)

③각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11.05.)

1. 연계전공 이수자

가. 부전공으로 이수: 연계전공 공통 이수학점 9학점 이상(필수포함) 및 소속 학부(과) 전공의 연계전공 이수학점 9학점 이상(필수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23.12.11.)

나. 복수전공으로 이수: 연계전공 공통 이수학점 21학점 이상(필수포함) 및 소속 학부(과) 전공의 연계전공 이수학점 15학점 이상(필수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11.05.)(개정 2023.12.11.)

2. 자기설계전공 이수자

가. 주전공으로 이수(1학년 이상 수료자): 전공필수 27학점 포함 전공 6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1학년 과정 중 이수한 전공필수학점은 본 대학 “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에 관한 규정”제19조제3항에서 정한 전공필수 이수학점에 포함한다.(개정 2019.11.05.)(개정 2023.00.00.)

나. 주전공으로 이수(2학년 이상 편입생): 제5조제1항에서 정한 편입학 학년별 자기설계전공 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1.)

3. 융합(공유)전공 이수자(신설 2019.11.05.)

가. 주전공으로 이수: 전공필수 27학점 포함 전공 6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1.)

나. 복수전공으로 이수: 본 대학 학칙 제30조에서 정한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1.)

④(삭제 2023.12.11.)

⑤이 규정에서 정한 각 과정 및 부전공, 복수전공, 글로벌브랜드트랙의 이수학점은 동일 교과목을 과정별 상호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1.05.)

**제8조 (졸업 및 학위수여)** ①과정별 이수자가 졸업전까지 동 규정 제5조 및 제7조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졸업은 불가하며, 기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시킨다.

②연계전공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학위기에 그 사실을 기재하며, 이수한 전공마다 별도의 졸업증서를 수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1.05.)

③자기설계전공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승인받은 전공명을 학위기에 표기한다.

④융합(공유)전공을 주전공으로 이수한 경우 해당 과정명을 주전공으로 학위기에 표기한다.(신설 2019.11.05.)

**제9조 (부전공 이수 인정 및 포기·취소자의 의무)** ①연계전공 이수자는 본 대학 학칙 “제30조의2제1항”에서 정한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의 의무이수 사항 중 부전공이수자로 본다.

②융합(공유)전공 또는 자기설계전공을 주전공으로 이수하는 자는 본 대학 학칙 “제30조의2제1항”에서 정한 과정중 하나를 별도로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11.05.)

③자기설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자 또는 연계전공을 이수하는 자가 중도에 포기 또는 취소할 경우 본 대학 학칙 “제30조의2제1항”에서 정한 과정중 하나를 별도로 이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취득한 연계전공 또는 자기설계전공 학점은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의 의무이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융합(공유)전공 또는 자기설계전공을 주전공으로 신청하여 이수하는 자가 중도에 포기 또는 취소할 경우 새로운 주 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기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하되, 주전공 또는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의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1.05.)

**제10조 (이수의 제한)** ①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계열(학과)의 동일전공 명으로는 융합(공유)전공 또는 자기설계전공으로 설치(이수)할 수 없다.(개정 2019.11.05.)

1. 외식조리계열학과(외식조리학부, 글로벌한식조리학과)
2. 보건계열학과(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응급구조학과, 언어치료·청각재활학부, 작업치료학과)
3. 유학계열학과(Global Dual Degree학부)
4. International Business학부 관련 학과 및 전공
5. 교직과정
6. 기타 총장이 설치(이수) 제한이 필요하다고 정한 계열(학과) 및 과정.

②학칙에 의하여 본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및 제3호 및 제4호의 학과명이 변경될 경우 학칙에서 정한 학과명으로 적용 한다.

**제11조 (기타사항)**①본교 “학칙 제8조제1항”과 관련하여 융합(공유)전공 및 자기설계전공을 주전공으로 이수하는 자의 수업연한은 학생의 소속 학과의 수업연한으로 적용 한다.(개정 2019.11.05.)

②총장은 각 과정별 이수자가 일정 수 이하이거나 소기의 개설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할 수 있다.(개정 2019.11.05.)

③기타 각 과정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학칙 및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9.11.05.)

④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승인을 통해 신청 및 이수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4.04.08)

부 칙(2012. 12. 0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 04. 0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 제11조 제4항은 2014년 4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1. 연계전공 설치 신청서

별지2. 자기설계전공 신청서

별지3. 연계전공, 자기설계전공 포기서

별지4.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추가·변경 신청서

부 칙(2015. 10. 0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의 특례)**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